



2003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2003. 4. 1. 현재 17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51.3조원으로 지난해 1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 55.0조원에 비해 3.7조원(6.8%)이 감소하였다.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전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비율 27.5%보다 2.2%p 감소한 25.3% 수준이다.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9조원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는 총 16.7조원으로 50.8%를 차지하여 지난해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대비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비율 41.4%에 비해 9.4%p 증가하였다. 적용제외출자는 동종·밀접관련 출자 9.8조원(81.1%), SOC법인 출자 1.1조원(9.1%), 공기업 민영화 1.1조원(8.8%) 등 총 12.1조원이고, 예외인정출자는 총 4.6조원으로 지난해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예외인정금액 7.1조원에 비해 2.5조원(35.2%)이 감소하였다.

한편, 5개 공기업집단의 출자총액 18.4조원 중 동종·밀접관련 적용제외출자가 17.5조원(95.3%)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이며, 예외인정출자는 없다.

법위반 출자 현황을 보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한도초과금액은 5.4조원 수준이며, 예외인정 등을 제외한 법위반 금

액은 1.7조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 중 지난해 의결권이 제한된 출자금액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될 출자금액은 약 0.24조원 정도이다.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50.7%→49.1%로 1.6%p 감소하였다.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집단(11개)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7.0%→46.6%로 0.4%p 하락하였고, 총수가 없는 민간기업집단(KT)의 내부지분율은 47.8%, 공기업집단(5개)의 내부지분율은 90.5%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치상으로는 출자총액이 감소(3.7조원)하고, 순자산대비 출자비율(25.3%)도 출자한도(25%)에 접근하고 있는 등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출자가 점차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전환, 구조조정절차진행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금액(3.0조원)을 고려하면 출자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공기업민영화, 동종·밀접관련 업종 출자 등 적용제외나 외국인투자법인 출자 등 예외인정제도를 활용한 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강화되거나 새로이 만들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수가 지배하는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내부지분율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



며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이나 공기업집단과 달리 현금투입지분(cash-flow rights)과 의결권(voting rights)간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공개 등 경영투명

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는 현재까지 한도초과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등 법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명령 등 시정조치(8~9월경)를 내리고, 이번 주식소유현황 분석을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개혁 T/F에서 제도개선방안을 3/4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 공정거래위원회 당정협의 개최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법 개정 추진키로 -

2003. 7. 3.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호석 제2정조위원장, 조재환 국회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 조학국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당 협의에서는 민관합동 T/F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주회사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100% 이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지주회사 전환유형 중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

이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교환·이전, 지주회사의 자산감소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에 대하여 유예기간 인정하며,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신규로 인정하고,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실제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즉, 현재 기업결합 완료후 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을 필요시 원상복구가 용이하도록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하고,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연장 기간을 60일



에서 90일로 확대하며,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일정기준(예 :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개선,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재판상주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범위안에 따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보전하기 쉽도록 소송제기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 사전예방 강화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기업결합신고 규정 위반의 예방을 위해 업체교육외에 금감원 공시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해당기업들이 신고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또한 홈페이지 안내를 비롯 「기업결합 질의응답집」, 「M&A Guide」 등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국내외 사업자·단체 등에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총 기업결합 처리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들의 관련규정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신고규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 위반 방지를 위한 집행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시자료의 점검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금감위, 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의 편입 및 제외 요청단계에서 기업결합심사와 연계하여 해당기업들의 기업결합신고 누락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소규모기업결합, 계열사간 임원겸임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면제를 추진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원천적으로 신고규정 위반 발생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7. 23.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경험·체험이나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보증 등을 이용

한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천·보증등을 이용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유형을 그 주체에 따라 소비자 추천·보증, 전문가 추천·보증, 단체 추천·보증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체험사실 소개나 비전문가의 추천·보증을 전문가의 추천·보증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 기만적인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 주름살이 퍼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건강식품·기구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경험 등 실제 사용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나 ▶ 의사복장을 하고 피부미용기기를 추천하는 자를 전문가라고 소개하였으나, 광고상의 전문가로 소개된 자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유형의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서 금지된다.

공정위,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효과적 방안 강구

공정거래위원회는 '03. 6. 30. 스팸 수신거부의사를 공정위에 밝힌 소비자의 e-메일, 전화번호 등 28만여개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 27,000여 업체에 일제 통보하였다.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가 공정위를 통하여 인터넷쇼핑몰 등 사업자에게 통보된 만큼, 앞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소비자 e-메일, 이동전화 등에 스팸을 보내면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스팸메일

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노스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바 있는데, 이번에 1차 통보된 28만여 계정은 개편 이후 공정위에 신고 접수해온 소비자들의 e-메일, 이동전화 번호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스팸발송 사업자들에게 스팸메일을 받지 원치 않는 소비자 명단을 통보하여 사업자가 신고 소비자에게는 스팸을 보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스팸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스팸을 계속



보내는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각종 시정조치 절차를 엄중히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에 의한 스팸발송 행위도 집중 규율해

나가며, 특별히 각종 음란 스팸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 노스팸시스템 : 소비자 개개인이 수많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점에 착안, 소비자가 공정위시스템에 스팸 수신을 원치 않는 소비자 e-메일 계정을 등록하면 그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 (www.nospam.go.kr)

공정위, 제3의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설립 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분야에 있어서 기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외에 제3의 공제조합(가칭 「앤젤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불인가를 결정하고 2003. 7. 21. 동추진위에 불인가 방침을 공식 통보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인가여부 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3의 공제조합 설립으로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새로운 조합 설립시의 사회적 비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은 보험원리를 통한 소비자피해보상이 제1차적인 목적이므로 공익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인가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번 제3

의 공제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앤젤공제조합의 출자구조는 특정 1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 위험분산을 통한 보험기능 수행이 곤란하고, 앤젤 가입 희망사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업체, 휴·폐업업체 등 요건 미비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보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앤젤 가입 희망업체 중 상당수는 기존 조합 가입사들로서 이들이 기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전체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위의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상 출자 예정 금액이 한달만에 85억원 감소한 바 있고, 기존 조합 가입사들이 앤젤로 이동하면서 기존 조합에서보다 훨씬 높은 담보액·출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



도 해당 업체의 능력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 판단되었으며, 높은 공제수수료·담보율에 따라 기존 조합 가입사들의 앤젤 참여 유인이 작아 출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3공제조합의 출자금 확보 가능성도 의문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현 다단계판매시장 규모와, 신생업체의 기존 조합 가입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업계에 3개나 되는 공제조합이 존재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2003.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3년 6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7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등 2

개 기업집단이 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2003. 6. 11)됨에 따라 2003년 6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6. 2. 361개에서 2003. 7. 1. 현재 345개로 16개사가 감소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6. 2. 현재 831개에서 2003. 6월중 8개가 신규편입되고, 5개가 계열제외 되어 2003. 7. 1. 현재 834개로 3개사가 증가하였다.

[2003. 6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 기업집단 | 2003. 6. 2. | 편 입 | | | 제 외 | | | | | | 증감 | 2003. 7. 1. |
|---------------------------|-------------|----------|-------------|---|-----|----|----|----------|----|----|-----|-------------|
| | | 회사 설립 | 주식취득 및기타 | 계 | 합병 | 매각 | 정산 | 친족 분리 | 기타 | 계 | | |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7개→15개) | 361 | - | - | - | 1 | - | - | - | 15 | 16 | △16 | 345 |
|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49개)* | 831 | 8 | - | 8 | 2 | 1 | - | - | 2 | 5 | 3 | 834 |

*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공정위 업무활동

[2003.6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8개사(회사설립 : 8)

◆ 제외 : 5개사(합병: 2, 지분매각: 1, 기타: 2)

| 기업집단 | 편 입 | | | 제 외 | | |
|----------|-------------|----------------------|------|------------|-------------------|------|
| | 회사명 | 영위업종 | 사 유 | 회사명 | 영위업종 | 사 유 |
| 씨제이 | 더시젠(주) | 각종 식음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회사설립 | | | |
| 동국제강 | (주)피엔씨티 | 항만하역 | 〃 | | | |
| 삼 보 컴퓨터 | (주)헬로우티지 | 사무용기기 및 정밀기기소매업 | 〃 | | | |
| 대 성 | 알파 정보통신(주) | 통신설비업 | 〃 | | | |
| | 베타 정보통신(주) | 〃 | 〃 | | | |
| | 감마 정보통신(주) | 〃 | 〃 | | | |
| | 델타 정보통신(주) | 〃 | 〃 | | | |
| | 오메가 정보통신(주) | 〃 | 〃 | | | |
| 현 대 자동차 | | | | 퍼스트 씨알비(주) | 그 외 기타금융업 | 피합병 |
| 한 국 전력공사 | | | | (주)와이티엔 | 종합뉴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 기타 |
| 롯데 | | | | (주)모비도미 | 컨텐츠제품의 개발 판매 및 보급 | 피합병 |
| 대 우 자동차 | | | | 대우버스(주) | 자동차제조업 | 지분매각 |
| | | | | 대우상용차(주) | 자동차제조업 | 기타 |

※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현대자동차」

공정위 인사

2003. 6. 24.

| | | |
|-------|--|---|
| 서기관 | 정책국 제도개선과 독점국 기업집단과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소비자보호국 특수거래보호과 | 행정사무관 최영근 행정사무관 고병희 행정사무관 진태환 행정사무관 홍대원 토목사무관 이달영 |
| 시설서기관 |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 |

2003. 6. 27.

| | | |
|-----|--------------------------------------|-------------------------------|
| 이사관 | 정책국 총괄정책과장 정책국 제도개선과장 경쟁국 단체과장 | 서기관 한철수 서기관 유희상 서기관 김태형 |
|-----|--------------------------------------|-------------------------------|

2003. 6. 30.

| | | |
|----|--|-----------|
| 복직 | 경쟁국 단체과 업무지원 (기간 : 2003. 6. 30~별도발령시까지) | 행정사무관 안병훈 |
|----|--|-----------|

2003. 7. 1.

| | | |
|------------------|--|--|
| 3급(부이사관) 대우 | 독점국 독점관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 서기관 장상진 서기관 정중원 |
| 4급(서기관) 대우 | 정책국 총괄정책과 경쟁국 경쟁촉진과 경쟁국 유통거래과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사무관 진충수 행정사무관 이유태 행정사무관 유성욱 행정사무관 박홍기 행정사무관 이용수 행정사무관 홍형주(심판관리1담당관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휴직기간 : 2003. 7. 1~2004. 6. 30) 행정사무관 이상협 |
| 공정거래위원회 | |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실 | | |

2003. 7. 2.

| | | |
|-------------|--|--|
|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 | 행정사무관 육성권 (파견기간 : 2003. 7. 2~2004. 7. 1.) |
|-------------|--|--|

2003. 7. 9.

| | | |
|-------------------------------------|--|---|
| 미국, The Law Firm of Lee & Hong 파견근무 | | 서기관 곽세봉 (파견기간 : 2003. 7. 15~2004. 5. 14) |
|-------------------------------------|--|---|

2003. 7. 16.

| | | |
|--------|--|---|
| 전문관 발령 | 핵심분야 소송수행담당 핵심분야 소송진행·통계담당 핵심분야 심결보좌담당 | 행정사무관 오행록(송무담당관실) 행정주사 하종식(송무담당관실) 서기관 장재군(심판관리1담당관실) 서기관 엄기섭(심판관리2담당관실) 행정주사 임성찬(하도급기획과) 서기관 강재영(조사기획과) |
| | 핵심분야 서면실태조사담당 핵심분야 부당내부거래조사담당 | |

2003. 7. 22.

| | | |
|--------------------------|--|--|
| 미국, 텍사스 서부지부 연방지방법원 파견근무 | | 서기관 조성국 (파견기간 : 2003. 7. 28~2003. 12. 27) |
|--------------------------|--|--|

2003. 7. 23.

| | | |
|----------------|--|--|
| 미국, 뉴욕주립대 파견근무 | | 행정사무관 진충수(총괄정책과) (파견기간 : 2003. 7. 31~2005. 5. 30) |
|----------------|--|--|